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4. 2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9. 4. 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99. 10.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가. 폐지이유

- 우리 시는 좁은 면적(53.46km²)에 약 4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없으며,
- 향후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할 경우 현실에 맞게 다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부천시는 현실적으로 공설묘지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 현행법으로 설치가 불가능함. 설치조례는 존치하고 사용및관리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임.
○ 다른 시·도에 묘지를 설치하더라도 사용및관리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사용및관리조례는 그때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시행하면 됨.
○ 설치조례도 같이 폐지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 그린벨트나 녹지에는 납골당 설치가 가능하므로 설치조례는 존치가 필요함.
○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화장문화, 납골당을 시민에게 권장한 사례가 있습니까?	○ 필요성과 장점을 홍보하고 또 권장하고 있음. 외부정보에 의하면 2개 정도의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의결년월일	99. 10. 12 (제73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폐지이유

- 우리 시는 좁은 면적(53.46km²)에 약 4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없으며
- 향후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할 경우 현실에 맞게 다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첨 부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81. 3. 16)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3.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

[본조신설 68. 12. 3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81. 4. 25)

1. 공설묘지

- 가. 공설묘지는 지형·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하되 붕괴, 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나.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를, 기타 지역에는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에 통하기 위한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 공설묘지는 녹화하여야 하며 주위에는 나무를 심어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라. 공설묘지는 도로(시도와 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마.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공설묘지를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설화장장

- 가. 공설화장장에는 소각장·관리사무실·대기실·기타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소각장은 완전히 연소가 될 수 있는 구조의 소각로가 설치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매연·분진 또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공설화장장 주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어야 한다.
- 라. 공설화장장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

접한 지역·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공설화장장을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공설납골당

가. 공설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설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설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납골당을 사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 [1973. 11. 24] 조례 제105호

개정 1975. 4. 22 조례 제151호

1980. 7. 15 조례 제402호

1984. 2. 13 조례 제6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에 의거 조성된 일반묘지와 공원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묘지의 사용) ①공설묘지 안에 사체(사태포함)나 유골을 매장 또는 수장코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허가자로 하여금 분묘 주위에 기념식수 등을 식재케 하거나 그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조(사용자의 자격) ①공설묘지는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이하 “관할구역외 거주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분묘의 면적제한) 분묘 1기당 6.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족묘지,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의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분묘의 형태 및 구조) ①분묘는 시장이 정한 형태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공설묘지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주소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

③공설묘지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묘지사용권의 승계) ①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1, 2에 의한 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를 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료는 동 묘원 조성 및 관리비에 각각 재투자되어야 한다.

③기납한 사용료와 관리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관의 거주자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제3조의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조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료액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분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타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공설묘지 내에서 공서양속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이 명하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종사자) 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잡급인부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13조(대기적지의 활용) 조성한 공설묘지 중 대기 적지에 대하여는 양묘장 또는 묘원(화원)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질이 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제14조(타법의 준용) 매장 개장 및 유골의 수장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장묘지 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3. 11. 24 조례 제105호>

1. 이 조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래 부천시묘지사용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1975. 4. 22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5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13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묘지사용료

기준	기본금액			3평초과 사용료	관외거주자 가산금액	비고
	계	사용료	관리료			
제곱미터 6.6	원 10,000	3,600	6,400	평당 1,200	50%	

※ 사용면적이 3.3㎡(1평)에 미달되더라도 이를 3.3㎡(1평)으로 본다.

※ 예시 : 사용면적이 9.9㎡(3평)일 때 묘지별 요금

$$150m \times \text{사용면적} \frac{9.9}{3.3} m^2 = 450\text{원}$$

(별표 2)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평수	허가신청서 납부금액			사용료 부담액			
	계	사용료	관리료	계	매장료	비선대	잔디료
제곱미터 6.6	원 31,700	15,400	16,300	※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다.			

※ 기준평수 초과사용시 사용료는 초과면적 비율에 의한다.

1. 비석 및 잔디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비하되 사용자가 현지부담
2. 매장 인부임은 사용자가 현지부담

○ 특 례

1. 외국인 및 관외거주자는 3할 가산징수
2. 사용료의 감면대상
 - 가. 독립 유공자 및 건국 공로자
 - 나.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
 - 다. 전기 각항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